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365호
----------	-------

2016. 5. 4.(수)  
정책복지 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4월 18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4월 27일

-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의 만료기간을 연장(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준용)하고,  
※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 연장 권고(산업통상자원부)
-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구분 기준인 '계약금액'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기준 '계약금액'과 매입기준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표기(안 제7조제1항의 별표1 제4호)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매입감면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하여 연장(안 제8조의 별표2 제2호타목)  
- '15.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준용
- 개정조례안 시행 전('16.1.1.이후)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부칙안 제2조)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임
- 정부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등록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규정을 동 조례안 포함하는 등 총 4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감면 규정(기간 연장)'의 조례반영 현황

- ① 2009.11월(~ 2012.12.31.까지)    ② 2013.5월(~ 2014.12.31.까지)
- ③ 2015. 5월(~ 2015.12.31.까지)
- ④ 2016. 5월(지방세특례제한법 준용/ ~ 2018.12.31.까지)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1항의 별표1 제4호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정의를 “총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일시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8조의 별표2 제2호 타목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여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의 만료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 부칙안 제2조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안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토록 개정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15년도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감면에 따른 채권매입 감소액은 1,516백만원으로, 기금수입의 주요 수입원인 공채판매액 155,215백만원의 차지비율이 1%로 미미하지만, 채면감면 제도 시행이후 전년도말까지 매출감소액은 총 74억원으로 추계됨.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본 취지에 맞게, 감면기간 종료 및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 2015년도 기금 수입현황

(단위 : 천원)

계	공채판매액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회수	전년도 이월액	기타수입
336,262,942 (100%)	155,215,870 (46.2%)	22,926,260 (6.8%)	70,707,800 (21.0%)	86,275,039 (25.7%)	1,137,973 (0.3%)

◆ 201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현황

(단위 : 천원)

계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체결	기타 허가 및 신고
	신규등록	이전등록		
155,215,870 (100%)	90,578,690 (58.4%)	12,655,200 (8.2%)	37,040,910 (23.9%)	14,941,070 (9.6%)

◆ 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감면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등록대수	4,951대	686대	580대	750대	859대	1,065대	1,011대
매출감소액	7,426,500	1,029,000	870,000	1,125,000	1,288,500	1,597,500	1,516,5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의 매입대상란 중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로 하고, 같은 목의 매입기준란 중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매입대상란 중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로 하고, 같은 목의 매입기준란 중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타목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
3.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 &lt;제7조제1항 관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매입대상</th> <th style="width: 50%;">매입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자동차 신규등록</td> <td>가~바(생략)</td> <td>가~바(생략)</td> </tr> <tr> <td>2.자동차 이전등록</td> <td>가~바(생략)</td> <td>가~바(생략)</td> </tr> <tr> <td>3.기타 허가 및 등록</td> <td>가~다(생략)</td> <td>가~다(생략)</td> </tr> <tr> <td rowspan="2">4.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td> <td>가. 공사도급 계약, 용역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td> <td><u>총 계약 금액</u> (<u>부가가치세</u> <u>제 외</u>) 의 2.5/100</td> </tr> <tr> <td>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td> <td><u>총 계약 금액</u> (<u>부가가치세</u> <u>제 외</u>) 의 1.5/100</td> </tr> </tbody> </table> <p>※ (생략)</p>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1.자동차 신규등록	가~바(생략)	가~바(생략)	2.자동차 이전등록	가~바(생략)	가~바(생략)	3.기타 허가 및 등록	가~다(생략)	가~다(생략)	4.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계약, 용역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 계약 금액</u> ( <u>부가가치세</u> <u>제 외</u> ) 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 계약 금액</u> ( <u>부가가치세</u> <u>제 외</u> ) 의 1.5/100	<p>[별표 1] 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 &lt;제7조제1항 관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매입대상</th> <th style="width: 50%;">매입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자동차 신규등록</td> <td>가~바 (현행과 같음)</td> <td>가~바 (현행과 같음)</td> </tr> <tr> <td>2.자동차 이전등록</td> <td>가~바 (현행과 같음)</td> <td>가~바 (현행과 같음)</td> </tr> <tr> <td>3.기타 허가 및 등록</td> <td>가~다 (현행과 같음)</td> <td>가~다 (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4.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td> <td>가. 공사도급 계약, 용역계약 (총계약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 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td> <td><u>총계약금액에</u> <u>서 부가가치세</u> <u>를 제외한 금</u> <u>액의 2.5/100</u></td> </tr> <tr> <td>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총계약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 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td> <td><u>총계약금액에</u> <u>서 부가가치세</u> <u>를 제외한 금</u> <u>액의 1.5/100</u></td> </tr> </tbody> </table> <p>※ (현행과 같음)</p>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1.자동차 신규등록	가~바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2.자동차 이전등록	가~바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3.기타 허가 및 등록	가~다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4.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계약, 용역계약 (총계약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 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계약금액에</u> <u>서 부가가치세</u> <u>를 제외한 금</u> <u>액의 2.5/100</u>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총계약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 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계약금액에</u> <u>서 부가가치세</u> <u>를 제외한 금</u> <u>액의 1.5/100</u>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1.자동차 신규등록	가~바(생략)	가~바(생략)																																	
2.자동차 이전등록	가~바(생략)	가~바(생략)																																	
3.기타 허가 및 등록	가~다(생략)	가~다(생략)																																	
4.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계약, 용역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 계약 금액</u> ( <u>부가가치세</u> <u>제 외</u> ) 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 계약 금액</u> ( <u>부가가치세</u> <u>제 외</u> ) 의 1.5/100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1.자동차 신규등록	가~바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2.자동차 이전등록	가~바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3.기타 허가 및 등록	가~다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4.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계약, 용역계약 (총계약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 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계약금액에</u> <u>서 부가가치세</u> <u>를 제외한 금</u> <u>액의 2.5/100</u>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총계약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 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u>총계약금액에</u> <u>서 부가가치세</u> <u>를 제외한 금</u> <u>액의 1.5/100</u>																																	

현 행

[별표 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8조 관련>

구분	면제대상 및 내용
1.기관·단체	가~차(생략)
2.사업·행위	가~카(생략)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u>2015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u> <u>&lt;신설&gt;</u>

개정안

[별표 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8조 관련>

구분	면제대상 및 내용
1.기관·단체	가~차(생략)
2.사업·행위	가~카(생략)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u>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u> 1. <u>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u> 2. <u>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u> 3. <u>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다.</u>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 4. <생략>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 9. <생략>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 ④ <생략>